

꿈나무 부자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꿈나무 부자 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함)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0 ~ 18세 이하로 1인 1통장에 한한다.

제3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가입한도 및 적립방법)

① 제8조의 보험 가입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의 최초 수납금액은 10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하고, 2회차 이후는 3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총 가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보험가입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고객의 최초수납금액은 5만원이상으로, 2회차 이후는 1만원이상으로, 총 가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이 실명확인하고 30인 이상 단체가입의 경우 최초수납금액을 1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분할인출) 갱신된 계좌에 한하여 2년단위로 4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분할인출후 계좌 잔액은 100만원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갱신)

① 이 적금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해지되지 않은 계좌에 대하여 제세금을 공제한 해지원리금을 첫회 적립액으로 2년 단위로 자동갱신 한다.

② 제2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한 계좌가 저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는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8조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③ 이 적금이 은행 사정에 의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갱신하지 않는다.

제7조(이자)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갱신 계좌에 대해서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갱신 계좌에 대해서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③ 제6조 제②항에서 정한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 계좌중 만기일이 경과하여 지급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최초 가입후 또는 갱신후 추가 적립이 없어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 계좌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일 또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가입일 또는 갱신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보험가입 서비스)

① 이 적금의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보험서비스는 은행 또는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1개월 전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한다.